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452)

2023. 02.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박칠성 의원 발의]

의안번호 452

# I. 조례안 개요

#### 1.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박칠성 의원 발의(찬성 32명)

나. 제안일자 : 2023년 02월 02일

다. 회부일자 : 2023년 02월 09일

# 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안이유

○ 서울시에 사는 저소득층의 경우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낮아서 자주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이에 저소득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이사비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가함. (안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박지향)

### 1 개정조례안의 취지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이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임.

## 2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 검토

#### 가. 해당 조례안의 필요성 및 내용

- 2021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가구1)의 경우 평균 이사횟수는 평균 4.5회로, 전국 평균 3.6회에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5회 이상 이사를 경험한 비율도 23.2%로 전국 평균이 18.8%인 것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기초생활 수급가구의 경우 평균 이사횟수는 평균 5.5회이며, 이 가운데 5회 이상 이사를 경험한 비율도 36.6%로 나타남.
- 동 조사에 따르면, 소득하위가구는 내 집을 꼭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비중이 17.3%로 전국 평균 11.1%에 비해 높게 나타남. 특히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경우 34.2%가 내 집을 꼭 마 련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 유는 자가마련보다 현재 상황의 여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sup>1)</sup> 본 조사에서 소득하위가구란 가구 경상소득이 10분위 중 1분위~4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를 의미함.

#### <표> 이사경험 및 이사횟수

	이사 경험 및 이사횟수 (%)								
7 11	이사한 적 있음					이사한적	평균		
구분		4 53	0.71	0.73	7	5회	모름/		
	소계	1회	2회	3회	4회	이상	무응답	없음	(회)
전국	75.3	16.3	15.2	16.2	8.7	18.8	0.1	24.7	3.6
소득하위 가구	63.6	14.7	9.2	10.4	6.1	23.2	0.1	36.4	4.5
기초생활 수급가구	78.0	12.2	10.6	11.0	7.4	36.6	0.3	22.0	5.5

〈출처: 국토교통부, 2021년도 주거실태조사〉

- 이처럼 소득이 낮을수록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자가를 마련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며, 저소득 주민의 경우 잦은 이사를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안정 지원의 내용에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추가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지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	
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이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1. (생 략)	12. (현행 제11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나. 서울시 저소득 주민 지원사업 추진현황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경제적, 사회적 또는 그 밖의 어려움이 있는 주민의 생활 안정지원을 위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 소득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조례에 근거한 생활안정 지원의 대상<sup>2)</sup>은 수급권자, 차상위계 층,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 는 사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 상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소득평가액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sup>3)</sup>
   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차등지원),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며,
-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동 주민센터・자치구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된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기타지원(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sup>2)</sup>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sup>1.</sup> 수급권자

<sup>2.</sup> 차상위계층

<sup>3.</sup>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sup>4.</sup>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

<sup>5.</sup> 그 밖에 생활안정지원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 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sup>1. 「</sup>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sup>2. 「</sup>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가 발생 한 때

<sup>3) 2022</sup>년 사업방침서 기준

<sup>-</sup>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45%이하

<sup>-</sup>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5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및 재산의 소득환산율 월 100% 적용 자동차 소유자 제외

#### 다. 기타 서울시 유사사업 추진현황

- (1)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서울시에서는 미래청년기획단과 주택정책실에서 각각 청년 부동
     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을
     통해 이사비를 지워하고 있음.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청년기본법 제20조4와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5, 서울특별시 청년주거기본조례 제7조6에 의해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임.

#### <표>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 '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				
	가구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지원 가능)				
기천네경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거주 무주택자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규모	· 약 5,000명				
지원내용	· 이사비 및 중개보수 포함하여 1인당 최대 40만원 한도내 실비 지				
	원 (생애 1회)				
소요예산	· 2,255백만원				
지원방법	· 청년포털사이트 신청시 자격요건 검증 후 실지출 비용 계좌입금				

<sup>4)</sup>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up>5)</sup> 서울특별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sup>6)</sup>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7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sup>1.</sup>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sup>2.</sup>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sup>3.</sup>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sup>4.</sup>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sup>5.</sup>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sup>6.</sup>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 2022년 해당 사업은 총 5,201명이 신청하였으며 3,286명이 선정 되어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2)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은 주택정책실에서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 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이주비 지원 등을 실시하는
 사업임.

#### <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사업 개요

구분	내용			
지원대상	<ul> <li>・ 국토부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li> <li>-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재해우려로 이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li> <li>-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자체 장 등이 추천한 사람</li> <li>-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li> <li>-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70%이하인 사람</li> <li>- 총 자산가액 242백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인 사람</li> </ul>			
지원내용	· 40만원 상한에서 이사비, 생필품비 등 이주비용 지원			
소요예산	· 2,664백만원 (국비 및 시비)			
지원방법	· 동주민센터로 신청 후, SH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지원			

이처럼 이미 서울시에서도 주거조례 등을 근거로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3 종합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이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소득층 주민 일수록 경제적 여건 등으로 인해 잦은 주거이동을 한다는 점에 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이미 집행기관의 다양한 부처에서 이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에는 지원기준과 금액의 설정, 중복수혜 배제방안 등 세밀한 검 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문의 처 서조사과 (02-2190-9147)

도미화 입법조사관 (02-2180-8147)

# 참 고 서울시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관련 현황

구 분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추진근거	<ul> <li>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주거복지사업)</li> <li>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국토부훈령 제1361호)</li> </ul>	<ul> <li>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제3항</li> <li>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제7조 (청년주거사업)</li> </ul>
추진목적	• 열악한 주거상황에 놓인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 및 상향 도모	•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사업내용	• 임대주택 입주지원, 보증금 지원(융자), 이주비 지원, 정착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거주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지하층(반지하 포함)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사람 /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소득)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 (재산) 총 자산가액 242백만원, 자동차 3,557만원 이하	<ul> <li>(주소)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 완료한 청년 가구</li> <li>※ 세대주 및 임차인은 청년 본인</li> <li>(연령) 만19~39세 이하</li> <li>(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li> <li>(주택) 거래금액* 2억원 이하</li> <li>※ 전·월세 보증금 + (월세액 × 100)</li> </ul>
지원금액	• 40만원 지원 (임대주택으로 주거이전(상향) 시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 최대 40만원 실비지원 (부동산 중개보수, 이사비,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지원인원	• 6,660가구 (공공임대 4,440호, 민간임대 2,220호)	• 5,000가구
사업예산	• 2,664백만원 (국·시비 50:50) - 400천원 × 6,660가구 = 2,664,000천원 ※ 총 사업예산 : 11,464백만원	• 2,000백만원 (시비 100%) - 400천원 × 5,000가구 = 2,000,000천원
소관부서	• 주택정책실(주거안심지원반)	◆미래청년기획단(청년정책반)